

<p>전국단위로 미술품에 대한 감정을 하고 있는 법인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금액으로 한다.</p> <p>제20조 본문중 “영 제25조제2호”를 “영 별표1의2제1호”로 한다.</p> <p>제22조 앞에 “제6장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미술장식품분과위원회”를 삽입한다.</p> <p>제22조제1항에 제7호 내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7. 미술장식품과 건축물과의 조화 8. 미술장식품 가격의 적정성 9. 기타 미술장식품의 도시미관에의 기여도 등</p> <p>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③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위촉직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,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한다.</p> <p>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제23의2(위원의 해촉)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위원이 임기중 사망한 때</li> <li>2.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</li> <li>3.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</li> </ol> <p>제30조제3항제1호중 “30퍼센트”를 “20퍼센트”로, “60퍼센트”를 “80퍼센트”로 하고</p> <p>제30조제3항제2호중 “예비비는 운용계정 총액의 10퍼센트로 한다”를 “당해년도 지원금중 10퍼센트 이상을 예비비로 확보한다”로 한다.</p> <p>제8장 제목 “서울시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”를 “서울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회”로 한다</p> <p>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33조(설치) 기금의 운용업무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회(이하“기금운용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제34조 내지 제36조의 “기금지원심의회”를 각각 “기금운용심의회”로 한다.</p> <p>제3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기금지원·조성·운영등 기본방향에 관한사항</li> </ol> <p>제3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③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</p>	<p>하되, 위촉직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, 당연직 위원은 그직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한다.</p> <p>제36조중 “제11조제1항 및 제12조”를 “제11조제1항·제12조 및 제23조의2”로 한다.</p> <p>제37조제2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.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, 공모를 통한 제작·설치권장 및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 접수 관련업무</li> <li>4.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의 사후보존 관리업무</li> </ol> <p>부 칙</p> <p>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 (기금지원 확대에 따른 적용례) 제30조의 개정 규정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부터 적용한다.</p> <hr/> <p>서울특별시생활체육진흥조례안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생활체육의 장려)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서울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·육성하여야 한다.</p> <p>제3조(경비의 지원)①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활동과 생활체육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제1항의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범시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</li> <li>2.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</li> <li>3.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·지원</li> <li>4.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·연구·프로그램개발 및 보급</li> <li>5.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</li> <li>6. 기타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li> </ol> <p>제4조(준용)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</p>
---	---

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여성설립및운영에관한  
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920	2001년 9월 일 보건사회위원회
----------	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1. 심사결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1년 8월 20일,  
서울특별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01년 8월 2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28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 
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 
(2001년 9월 10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여성정책관 김애량)

가. 제정이유

실질적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의 경쟁력 향상,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, 2002년 개관예정인 「서울여성플라자」의 관리·운영을 위하여 「재단법인서울여성」을 설립·운영함으로써 공공성 확보와 여성정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(1) 재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음.(안 제3조)
  - 가) 서울여성플라자(동작구 대방동 345 소재) 운영 및 관리
  - 나) 여성의 사회활동 네트워크의 거점화 사업
  - 다) 여성인력 개발 및 경제자원화 사업
  - 라) 여성자원봉사 활동의 관리 및 육성사업
  - 마)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
  - 바) 국내·외 여성교류 및 단체활동 강화사업
  - 사) 여성의 문화활동 및 복지증진 사업
  - 아) 여성관련시설간 프로그램 연계 및 교류사업
  - 자) 여성관련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
  - 차)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- (2)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함.(안 제4조)

- (3) 정관기재사항을 규정하고,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을 승인신청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.(안 제5조)
- (4) 임원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도록 하며,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함.(안 제6조 및 제9조)
- (5) 상임이사는 재단 및 서울여성플라자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, 감사는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도록 함.(안 제8조)
- (6)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들 수 있도록 함.(안 제11조)
- (7) 재단은 매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년도 개시 1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.(안 제15조제1항)
- (8) 재단은 매년도 세입·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.(안 제15조제2항)
- (9) 여성관련 시설 및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6조)
- (10)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하며, 필요한 경우 시정지시 또는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7조)
- (11)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안석수)

가. 개요

○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여성설립및운영에 관한조례안은 여성의 경쟁력 향상,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, 2002년 개관예정인 「서울여성플라자」의 관리·운영을 위하여 「재단법인서울여성」을 설립·운영하려는 것임.

나. 검토사항

- (1) 상임이사 임명(안 제9조제2항)
  - 안 제8조에 의하여 상임이사는 재단 및 서울여성플라자를 대표하며, 업무를 통할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안 제9조제2항에 의